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학 입학 연령 제한을 폐지해 가는 추세,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있어 교육이 갖는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교육지원 대상 관련 연령 제한, 거주지 보호기간 또는 학력 인정 후 일정 기간 내 지원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35255호, 2025.2.11. 공포·시행) 개정
에 따라,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(제4조)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의견조치 완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일부개정예규안

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장 총칙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교육지원의 대상) 법 제24조 및 법 시행령(이하 ‘영’이라 한다)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와 같다.

1. 국내의 중학교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
2. 국내의 대학·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
3. 국내의 산업대학·전문대학·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·기술대학 및 각종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,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제4조(교육지원의 대상) ① 법 제</u> <u>24조 및 법 시행령(이하 ‘영’이</u> <u>라 한다) 제45조의 규정에 따른</u> <u>교육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</u> <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</u> <u>대상자와 같다.</u></p> <p><u>1. 국내의 중학교등에 만 25세</u> <u>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</u> <u>사람</u></p> <p><u>2. 국내의 대학·교육대학에 거</u> <u>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</u> <u>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</u> <u>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</u> <u>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</u> <u>학한 사람으로서 입학 당시</u> <u>만 35세 미만의 사람</u></p> <p><u>3. 국내의 산업대학·전문대학</u> <u>·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</u> <u>통신대학·사이버대학·기술</u> <u>대학 및 각종학교, 「평생교육</u> <u>법」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</u> <u>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, 「학</u> <u>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</u></p>	<p><u>제1장 총칙</u></p> <p><u>제4조(교육지원의 대상) 법 제24</u> <u>조 및 법 시행령(이하 ‘영’이라</u> <u>한다)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교</u> <u>육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</u> <u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</u> <u>자와 같다.</u></p> <p><u>1. 국내의 중학교등에 입학 또</u> <u>는 편입학한 사람</u></p> <p><u>2. 국내의 대학·교육대학에 입</u> <u>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</u></p> <p><u>3. 국내의 산업대학·전문대학</u> <u>·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</u> <u>통신대학·사이버대학·기술</u> <u>대학 및 각종학교, 「평생교육</u> <u>법」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</u> <u>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, 「학</u> <u>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</u> <u>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</u> <u>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</u> <u>또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</u> <u>개발법」에 따라 학위과정을</u> <u>운영하는 기능대학에 입학 또</u> <u>는 편입학한 사람</u></p>

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에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

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령 산정은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